#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 안<br>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07. 12. .
제 출 자 : 성주군수

## 1. 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을 확산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가.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함(안 제3조)

나.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군수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희생·공헌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토록 함(안 제5조)

라.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토록 함(안 제6조)

마.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국가보훈기본법」제5조

2) 권고안 :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5022(2007.8.17.)호,
경상북도 사복-10490(2007.6.28)호

나. 예산관련사항 :

다.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조례 제　　호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집” 문패 제작 증정
7.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시 조문과 근조화 등 전달
8.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위로·격려
9.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기타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 하는 경우
2.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5. 기능직 등 신규공무원 채용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6.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취득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7.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분위기조성 등 여건마련에 노력하여야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